

전발연 2004-R-15

향토지적재산권 활용을 통한 세외수입 확충방안

2004



전북발전연구원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진

연구책임 이승형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 및 정책건의

I. 연구의 개요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지방행정 수요 급증 및 수요충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필요하게 됨
- 지역 특유의 향토자원을 활용한 향토산업 육성과 보호를 위해 향토지적재산권을 확보하는 추세에 따라 향토 지적 재산권의 활용을 통한 세외수입 관리방안이 필요함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향토 지적 재산의 권리 활용을 통한 세외수입 확충방안을 제시함

2. 향토지적재산권의 의의

- 향토지적재산권은 지방에서 전래된 문화기술도산품 또는 자연 환경 등에서 상품성을 기준으로 별도로 선정된 것을 의미함
- 향토자원 발굴의 최종 목표는 산업화에 있으며,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독점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 등록을 필요로 함
- 전라북도의 향토지적재산 관리의 문제점은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인식 부족, 향토지적자원의 조사 미비,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권리취득 부재로 요약할 수 있음

3. 향토지적재산권을 이용한 세외수입확충 사례

- 전주시의 향토지적 재산권 활용사례
 - 전주시 비빔밥 상표·서비스표
 - 전주의 향토자원인 비빔밥의 전통적인 옛 맛을 살려 관광상품화하고, 해외시장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해 상표와 서비스표를 특허청에 등록함
 - 상표·서비스표권자는 전주시가 되고 상표·서비스표사용권자는 (주)전주비빔밥이 되어 2000-2003년간 37,478천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으며, 향후 매출 확대에 따라 세외수입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음

- 전주시 전통한옥 모형 산업화 실용신안권
 - 전통주거양식 가운데 하나인 전통한옥마을을 자원으로 하여 한옥모형 건축의 생산 및 판매를 원활히 하고, 소득창출을 위해 특허청에 실용신안권을 등록함
 - 2004년도에 실용신안권 출원을 하여 금년도에는 세외수입을 올리지 못하였으나, 향후 지속적인 매출 확대를 세외수입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음

- 전주시 향토지적재산권의 경영단계 분석
 - 전주시의 비빔밥 상표·서비스표와 전통한옥 모형 실용신안권은 전주 지역의 향토색이 짙은 향토산업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장을 잠식당하는 것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방어단계와 생산성향상을 위한 비용절감단계, 그리고 공격적 마케팅을 통한 수익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수익창출 단계의 위치에 있음

II. 정책건의

1. 지자체의 효율적인 향토지적재산권 관리방안은 다음과 같음
 - 향토지적재산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조사 실시
 - 향토지적재산권의 실태분석 및 가치평가와 전산화 구축
 - 향토지적재산권의 관리(출원, 등록) 대책 수립을 위한 관리조직 및 인원, 예산의 확보
 - 향토지적재산권의 국제출원 시도
 - 향토지적재산권 갖기 운동 전개

2. 향토지적재산권의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음
 - 향토지적재산권의 장단기 활용계획 수립
 - 보유 향토지적재산권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실태분석과 기술 및 권리의 기업 이전, 권리의 사용료 수입 현실화를 위한 노력 등이 필요함
 - 향토지적재산 사이버 시장의 구축 운영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2 장 향토지적재산권의 의의	5
제1절 지적재산권의 개요	7
제2절 향토지적재산권의 개요	12
제3절 전라북도 향토지적재산 관리의 문제점	16
제 3 장 향토지적재산권을 활용한 세외수입 확충 사례	19
제1절 전주시 세외수입현황	21
제2절 전주시의 향토지적재산권 활용사례	22
제3절 전주시의 향토지적재산권 경영단계 분석	27
제 4 장 향토지적재산권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방안	31
제1절 향토지적재산권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33
제2절 향토지적재산권의 활용방안	36
제 5 장 결론	39
■ 참고문헌	43

표 목 차

<표 3-1> 세입총괄	21
<표 3-2> 경상적 세외수입	22
<표 3-3> 임시적 세외수입	22
<표 3-4> 전주비빔밥 상표·서비스표 사용료 수입	24

그림 목 차

<그림 2-1> 향토지적재산 개념도	13
<그림 3-1> 지적재산권 활용 계층도	28

제 1 장

서 론

제 1 장 서론

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됨에 따라 주민들의 지방행정에 대한 기대 즉 지방행정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대부분은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어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에 대한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통해서 확보하는데, 지방세는 지역간 발전수준의 격차, 세원의 편재 및 소득의 불균형 등에서 자치단체간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지방세를 확충하는데 근본적인 한계를 갖는다.

그러나 또 하나의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비교하여 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한 비교적 자유로운 영역으로 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확대·개발이 용이하며 조세저항이 상대적으로 적은 장점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잠재적 수입원으로 고려되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사회에서 특성 있는 향토자원을 개발 또는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향토산업 육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향토지적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보유하는데 역점을 두기도 한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지적재산권은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욱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국제경쟁의 전략적 수단으로써 그 가치와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지적재산권은 본래 자기가 가진 기술을 타인이 확인할 수 있게 공개하면서 연구개발의 노력의 대가로 배타적 독점권을 갖는 것으로, 단지 권리 보호의 목적이 아니라 독점적 사업권, 기술이전을 통한 라이선스 획득, 기술판매를 통한 수익 확보 등의 직접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향토지적재산권의 보유와 활용을 통한 세외수입의 확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장

향토지적재산권의 의의

- 제 1 절 지적재산권의 개요
- 제 2 절 향토지적재산권의 개요
- 제 3 절 전라북도 향토지적재산 관리의 문제점

제 2 장 향토지적재산권의 의의

제 1 절 지적재산권의 개요

1. 지적재산권의 개념

지적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영업비밀 등 인간의 정신활동 결과 얻어진 무형적 재화에 대한 권리를 총칭하는 말이다.

최근 들어 이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이란 용어로 바꿔쓰는 경우도 있는데 모두 같은 의미이며, 이 분야의 일을 하는 사람들간에는 영문 Intellectual property의 두 음자를 딴 IP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지적재산권은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욱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국제경쟁의 전략적 수단으로써 그 가치와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2. 지적재산권의 종류

1) 특허권

산업재산권 중 가장 전형적이고 그 경제적 비중이 큰 것이 바로 특허권으로, 특허의 대상인 '발명'에 대해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특허권은 구체적으로, 새로운 제조기술에 대하여 인정되는 '방법특허', 신물질 자체의 발명에 인정되는 '물질특허', 새로운 용도 개발에 주어지는 '용도특허' 등으로 나누어진다.

'방법특허'는 일정한 기술문제의 해결을 향하여 계열적으로 관련이 있는 수개의 기술수단 내지 현상이 시간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발명에 대하여 주어지는 것으로서, 물질(물건)의 생산 방법, 사용 방법, 취급 방법 등으로 세분될 수 있다.

'물질특허'는 일정한 유체물인 물건이나 물질에 대한 발명에 주어지는 것으로서, 기계, 기구, 장치, 시설과 같은 제품에 관한 발명인 물건발명과 화학물질이나 조성물과 같은 물질 자체의 발명인 물질발명으로 구분될 수 있다.

'용도특허'는 특정의 물질 또는 화합물에 대하여 물질 자체가 지니는 특성(용도)을 발견하는 것에 주어지는 것으로서, 용도발명은 주로 화학물질 관련 발명에서 많이 존재하며, 그 일례로 기존의 화학물질인 요소에 종전에는 알지 못했던 속성인 방부효과가 있음을 발견하였다면 「요소를 이용한 방부제」로서 용도 발명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용도발명의 실시의 모습은 그 발명의 사용형태에 있으므로 용도발명은 크게 방법발명의 범주로 구분하기도 한다.

특허등록을 위해서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에 해당하는 '발명'으로, 신규성·산업상 이용가능성·진보성이란 기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화폐위조기나 사기 도박 기구 등과 같이 공공의 질서나 풍속을 문란하게 하는 발명 및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발명자가 아무리 훌륭한 발명을 했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발명자가 특허청에 출원서 및 명세서, 도면, 요약서 등 소정서류를 제출하고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등록이 되어야 특허권이라는 결실이 맺어진다.

이 과정은 일반인에게는 그리 쉬운 일이라 할 수 없고, 특히 특허청구범위 부분은 권리보호에 있어 핵심적인 것으로, 매우 정확하고 엄밀하게 작성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후에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거나, 심한 경우 특허를 거절당할 수도 있으므로 대부분 변리사 등 전문가에게 위임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실용신안권

실용신안은 발명보다 낮은 단계에서 보호되는 기술적 창작으로, 물건에 관한 고안(utility model) 그 자체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어 흔히 특허는 대발명, 실용신안은 소발명이라 불린다.

실용신안제도는 인간생활에 유용한 새로운 물품을 창작하였지만 특허부여에 필요한 기술적 진보 또는 발명의 고도성 기준에 달하지 못한 소발명(小發明)을 짧은 기간 동안 간이·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입법화된 것이다.

실용신안제도는 신규의 실용품에 대한 고안자에게 특허보다 단기이지만 일정 기간

그 고안을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중소기업자와 기술자를 격려하여 적은 비용으로 낮은 수준의 기술개발이라도 이를 촉진,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고 중소기업간의 기술경쟁을 촉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며, 동시에 실용신안제도에 의한 소발명의 보호는 특허제도의 보호대상인 발명수준의 저하를 방지하는 역할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실용신안권은 특허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산업발달에의 공헌도가 낮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고 있으나, 현재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약 26개국 정도의 소수 나라에서만 인정되고 있다.

실용신안에 대한 법적 보호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등록출원 후 10년으로 되어 있으며, '99. 7. 1부터 '실용신안 선등록 무심사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출원 후 3~6개월이면 권방식심사 및 기초적 요건심사를 통하여 등록증을 받아 볼 수 있고, 이 후 기술평가 청구에 의한 등록유지결정을 받음으로써 실질적인 권리의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기술평가제도는 실용신안 선등록제도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권리의 양산 문제를 방지하고 실용신안권을 제3자에게 행사하는 경우 신중을 기하기 위해 선등록된 실용신안권의 적법성 및 유효성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말하며, 기술평가를 통한 등록유지결정을 받아 이를 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 경고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등록실용신안권자라 하더라도 자기 권리를 실시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다른 사람을 침해혐의로 민·형사상 권리 행사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특허청에 기술평가의 청구를 하여 유효한 권리인지 여부를 평가받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3) 의장권

의장은 보통 디자인(design)과 같은 의미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디자인은 광고포스터, 그래픽 디자인 등과 같은 시각디자인, 생활공간이나 환경에 관한 환경디자인, 제품에 관한 제품디자인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나, 의장은 디자인 중 특히 '제품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산업재산권법에서 말하는 의장이란 '심미성을 가진 고안으로서 물품에 구현된 외관(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 인간의 시각을 통해 미적인 감각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의장이 신규성과 창작성 및 공업상 이용가능성 등 요건을 구비하여 특허청에 출원 절차를 밟아 권리를 취득한 것이 의장권인데, 의장권은 설정 등록일로부터 15년간 보호를 받게 된다.

의장은 모방이 용이하고 유행성이 강한 특성이 있으므로 다른 산업재산권법과는 다른 몇 가지 특유의 제도를 가지고 있다. 예컨대, 유행성이 강하고 모방이 용이한 물품에 대한 무심사등록제도(의장법상 물품분류로 규정), 기본의장의 변형된 의장을 유사 의장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유사의장제도, 2종 이상의 물품이더라도 한벌 전체로써 통일성이 있는 것에 대해 하나의 의장으로 등록받을 수 있게 하는 한벌물품 의장제도, 그밖에 출원인이 원하면 의장권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공고하지 않고 비밀 상태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비밀의장제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의장등록을 받기 위하여는 개발된 새로운 제품의 외관이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신규성이 있어야 하고 창작적이어야 한다.

의장은 오늘날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문화적 요구를 만족시켜주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의 상승을 유도하여 줌으로써 상품의 품질 이상으로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4) 상표권

상표법상의 상표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과 색채의 결합'을 말하는 것으로 상품의 얼굴이다. 즉, 일정 제품의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그 상품의 출처가 자신임을 밝히고,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상징 등을 말한다.

상표는 어느 한 제품을 만드는 여러 다른 생산자의 상품들을 자기의 상표와 식별해주는 기능뿐만 아니라 동일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은 통상 동일한 성능과 품질을 가지고 있다고 수요자로 하여금 기대케 하는 품질보증 기능, 동일 상품은 동일 출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수요자에게 나타내는 출처 표시 기능, 상표가 상품 내지 상품이미지와 함께 수요자에게 기억되면, 수요자는 상표를 접할 때마다 상품과 상품이미지를 연

상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상표의 상담에 대한 심리적 연상 작용을 동적인 면에서 파악한 기능인 광고선전 기능을 갖고 있다.

특히 출처 표시 내지 품질보증의 기능을 통하여 상표사용자의 신용이 상표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상표의 재산적 가치는 여타 동산, 부동산 등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극히 높이 평가되는 경우도 있으며, 상표법 등에 의한 독점배타적인 보호를 받아 극히 유리한 경쟁도구로서 시장독점적인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의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간이나, 존속기간 갱신 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계속 사용을 하는 한 반영구적인 효력을 갖는다.

상표는 그 구성 요소에 따라 문자상표, 도형상표, 기호상표, 색채상표, 소리상표, 입체상표 및 이들의 결합상표 등이 있다. 최근 미국은 자수용 실 및 바늘용 실에 특징적인 냄새를 담아 상표화한 것을 인정하였으며, 그밖에도 빛이나 맛을 소재로 한 상표도 등장, 상표의 범위가 상상을 초월하여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자기 회사 제품이나 상호를 돋보이게 하려는 기업들의 욕구가 점차 강렬해지고 있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여러 사람에 의하여 출원된 경우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등록을 허용하는 선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상표가 정하여 졌다면 가능한 빨리 출원하여야 한다.

상표는 등록일로부터 10년간 권리가 주어지는데, 만일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상표권자나 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든 등록된 지정상품 중 1이상에 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해관계가 있는 타인으로부터 불사용을 이유로 하는 취소심판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때 상표권자가 사용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등록상표는 등록이 취소되므로 이점 유의하여야 한다.

5) 저작권

원래 저작권은 인쇄술의 등장에 따라 권력자들이 인쇄출판업자를 자신의 통제하에 두기 위해 특권제도를 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자유주의와 개인주의 사상이 대두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창작자 보호를 위한 관련법들이 입법화되었고, 그 보호대상은

서적에서 출발하여 음반, 그림, 조각물, 사진, 영화, 악보, 광고, 지도, 컴퓨터 프로그램 등은 물론 최근에는 넷(net) 상에서의 송신행위까지 문제가 되는 등 끊임없는 진화과정을 거치고 있다.

종종 매스컴을 통해 '저작권 침해사건' 내지 '표절사건' 등이 제기되는데, 이것은 저작권법상 저작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저작권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문제이다. 즉 저작자는 복제·배포·공연·방송·전시·2차적저작물 등의 작성을 비롯하여 컴퓨터통신 등에 의한 전송의 경우 등에 대해 독점적·배타적 권리(저작권재산권)를 가지는데, 이용자가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바로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밖에도 저작자의 성명표시를 안한다든가, 저작물의 내용을 함부로 변경한다든가하는 경우에는 이른바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공표권,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문제가 된다.

저작권은 산업재산권과 달리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여서 특별히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상 저작권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거래 안전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등록제도'를 두고 있다.

저작권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권리관계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저작권 보호기간의 산정(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 보호 원칙) 문제 및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저작권 이용 절차 및 계약 문제 등 그야말로 저작권 보호·관리를 제대로 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저작권위탁관리 업체에 자신의 저작물을 위탁하여 신탁·대리·중개 등 관리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것도 효율적일 수 있다.

제 2절 향토지적재산권의 개요

1. 개념

향토지적재산은 '우리 선조의 지혜와 생활의 멋이 담겨 있는 다양한 전통 문화 유산이나 각 지역의 고유 산물 등을 현대 사회에 맞게 재창조한 유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이러한 향토지적재산을 넓은 뜻으로 보면, 여기에는 향토나 전통과 연관된 유무형의 모든 자산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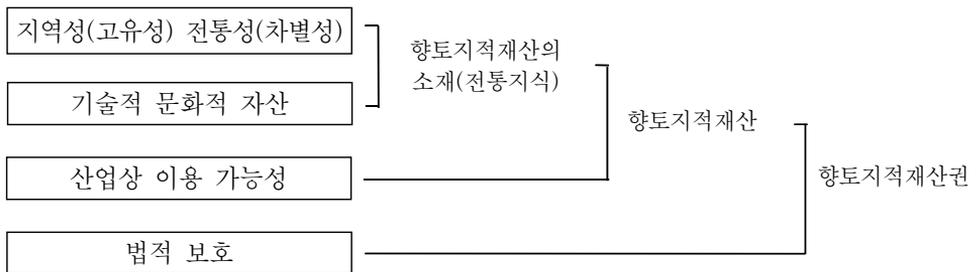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모든 자산을 빠짐없이 개발하여 상품화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향토지적재산의 범위를 좁은 뜻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 때에는 넓은 뜻의 향토지적재산 중에서 전래성·특이성·상품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볼 때 고부가가치 상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한정된다.

즉 좁은 뜻의 향토지적재산은 각 지방에서 전래된 문화·기술·토산품 또는 자연 환경 등에서 상품성을 기준으로 별도로 선정된 것을 말한다. 좁은 뜻의 향토지적재산 선정 요건 중 전래성은 다시 역사성과 지역성으로 나눌 수 있다.

역사성은 적어도 3세대(90년) 이상 우리나라 또는 특정 지역에서 전해 내려온 것을 말하며, 지역성은 해당 지역에서 개발, 전수된 것을 뜻한다.

둘째 요건인 특이성은 기술이나 원료면에서 고유하거나 독특한 것을 의미하고, 마지막 요건인 상품화 가능성은 원료의 안정된 공급과 기술 개발을 통해 대량 생산이 가능하거나, 소량 생산이라도 고가 판매가 가능해 상품으로서의 경제성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뜻의 향토지적재산의 기준은 이와 같지만, 이 기준 자체가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선정 기준은 사회통념의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그림 2-1> 향토지적재산 개념도

2. 향토지적재산의 종류

1) 식생활문화

향토지적재산이 될 수 있는 식생활 문화로 가장 대표적인 것에는 김치·간장·고추장·된장 등의 전통 발효 식품과 식혜·수정과·전통차 등의 민속 음료, 그리고 문배주·

두견주·범주·이강주·복분자주 등의 민속주가 있다.

이 중 김치의 경우를 살펴보면 김치는 재료·양념·조리법에 따라 수많은 종류의 맛을 낼 수 있으므로,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독특한 맛의 김치를 만들어 향토지적재산화 할 수 있다.

또한 김치소스·김치잼·김치야채주스 등 김치와 관련된 모든 가공 식품까지 범위를 넓히고, 절임·숙성·포장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을 표준화하는 기술을 개발해 향토지적재산의 영역을 넓혀 나갈 수 있다.

나아가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와 같은 지역 행사까지 연결되면, 전통 식품과 현대적인 기술, 지역 특산품, 관광 문화 상품이 종합으로 어우러지는 향토지적재산을 만들어 낼 수 있다.

2) 의생활문화

우리 나라의 의생활 문화 가운데 섬유제품을 중심으로 한 고부가가치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다양하게 향토지적재산의 권리화를 피하고 상품화에 성공할 수 있는 분야이다. 전통 염색·제직(製織)·전통 고유문양의 개발을 포함한 직물(織物)디자인·패션 디자인·봉제 관련 기술 등의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한산 모시와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마 섬유의 의복화에 성공한 안동포 등이 대표적이다.

3) 주생활문화

주거 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향토지적재산의 대표적인 예는 온돌과 한지를 들 수 있다.

온돌은 피로를 없애 주고 자연 치유력을 발휘하며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보고(寶庫)라 할 수 있는데, 이를 현대 난방 시스템 기술과 접목하여 온돌난방시스템을 개발하면 세계적인 상품이 될 수 있다.

한편 전통 한지는 내구성과 보존성이 뛰어난 뿐 아니라 감촉과 흡수성이 좋은 점 등 양지(洋紙)에 비해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주로 이용되는 창호지·벽지·

편지지·색종이·포장지·화구 용품 이외에 인쇄용도 등 수요가 확대되고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면 그 부가가치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4) 과학기술

전래적으로 내려온 과학기술의 형태로서 옷칠·전통 천연염료와 한방 의료기기 등도 향토지적재산의 일형태로 볼 수 있다.

옷칠은 방열·방수·절연·단열 효과가 커서 잠수함이나 고급 승용차·만년필·라이터 등에 사용되며, 접착력과 흡입력이 뛰어난 고유 도료이다. 옷의 정제(精製)·채취·건조·도장(塗裝) 기술과 옷칠의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이 더욱 발전하면 국제 경쟁력을 갖는 고급 상품이 될 수 있다.

전통 천연염료는 감꽃·쪽·쪽두서니 등의 식물에서 추출된다. 다양한 색깔을 나타낼 수 있을 뿐 아니라 방충·살균작용도 하며, 무공해 염료로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천연 소재에 천연 염료를 사용한 한복 및 약리(藥理) 작용을 이용한 노인용·아동용·환자용 의류 등에 응용할 수 있으며, 천연염료 그 자체를 화장품이나 식용 색소 등에 이용할 수 있다.

5) 민속예술과 기법

전통 도자기와 옹기, 이 밖의 다양한 우리의 전통 문화 예술도 향토지적재산의 대상이 된다. 이 중 옹기는 통기성(通氣性)과 정화능력이 뛰어난 우수한 전통기술의 산물이다. 이러한 전통기술을 바탕으로 현대에 맞게 가공하여 다양한 상품으로 재창조할 수 있다.

이 외에 각 지역의 문화 유적이거나 민속 놀이·인물·자연 환경 등 각 지역의 독특한 자산도 넓은 뜻의 향토지적재산에 속한다.

3. 향토자원의 산업화와 권리화

아무리 좋은 물건도 장에 내다 팔지 않으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과 같이,

향토자원도 개발하여 산업화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동안 전통 문화와 고유 기술에 대한 산업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여기에는 향토자원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산업화 방안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 향토자원 발굴의 최종 목표라 할 수 있는 산업화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유 문화를 지켜나가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산업화와 별도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향토자원의 권리화이다. 권리화는 지적 재산에 대한 자신의 독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러한 권리화의 형태에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영업 비밀 등이 있는데, 이들이 지적재산권의 골격을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향토지적재산에 현대적인 생산 기술을 더하여 새로운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한 경우 기술적으로 획기적인 때에는 특허권으로, 종전에 있던 제품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였거나 불편한 점을 개선한 정도일 때는 실용신안권으로 권리화할 수 있다. 또한 종전 제품에 기술적인 변화는 없으나 현대 감각에 맞는 색채나 모양 등 디자인을 변화시킨 경우에는 의장권으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었을 경우는 상표권으로, 기술에 대한 각종 기록이나 영상물 등은 저작권이나 영업 비밀로 보호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화는 향토자원의 특성에 따라 복합적인 방법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해야 할 점은 권리화가 향토자원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점이다. 최종 목표는 어디까지나 산업화이다. 권리화는 산업화를 뒷받침하는 수단이며, 타인, 타회사, 또는 외국의 권리 침해를 막는 방패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향토자원이라 해도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에서 필요로 하는 법 요건을 갖추어야만 권리화가 가능함은 물론이다.

제 3 절 전라북도 향토지적재산 관리의 문제점

1.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인식 부족

향토지적재산은 활용 여하에 따라 개발 가능 분야가 무궁무진하지만, 아직도 향토지적재산의 가치에 대한 인식은 미흡하다. 향토지적재산은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생활 속에서 향토지적재산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산업화해야 하지만 극히 일부만이

이러한 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들도 향토지적재산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향토지적자원의 조사 미비

향토지적재산의 산업화는 지역 내에 존재하는 각종 향토자원을 조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산업화가 가능한 향토자원은 무궁무진하므로 향토지적자원을 조사하는 데에는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함께, 각 자치단체에서 개발가능한 향토자원을 최대한 찾아내야 하고, 이를 토대로 가치있는 것들을 선택하여 산업화로 유도해야 한다.

다양한 주체의 참여하에 논의되고 선택된 향토지적재산이야말로 지역의 정체성을 잘 나타내면서 수익성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현실은 향토자원의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3.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권리취득 부재

세계무역기구(WTO)는 농수산물의 지리적 표시를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하고 있고, 상표권은 먼저 등록한 자에게 독점권을 인정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기업체와 개인들이 상표등록과 특허·실용신안 등의 지적재산권을 취득하고 관리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순창군의 경우 순창고추장의 국내 상표권은 순창지역에서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타인이 먼저 상표등록을 취함으로 순창고추장의 미국내 상표등록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침해는 어느 지역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상표권이나 특허권 등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권리의식의 부재에서 기인한 것이다.

제 3 장

향토지적재산권을 활용한 세외수입 확충 사례

- 제 1 절 전주시 세외수입현황
- 제 2 절 전주시의 향토지적재산권 활용사례
- 제 3 절 전주시의 향토지적재산권 경영단계 분석

제 3 장 향토지적재산권을 이용한 세외수입 확충사례

제 1 절 전주시 세외수입현황

전주시의 일반회계 세입 총액(2003)은 약 5,383억원이며, 일반회계 세입 중 세외수입 비율은 23.9%(1,290억원)이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222억원(17.2%), 임시적 세외수입이 1,068억원(82.8%)이다.

이는 전주시의 일반회계 세입의 세외수입 부문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의 비율이 경상적 세외수입보다 약 4.5배나 많아 지나치게 임시적 세외수입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유재산의 지속적 활용에 의한 수입창출 노력이라기보다는 특정 연도에 소유재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처분과 동시에 재산의 가치는 소멸되는 임시적 세외수입은 그 의미가 크게 반감되므로, 실질적인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주시의 재정 확충의 방향은 향후 경상적 세외수입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전주시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이 44.8%(99억원)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용료 수입이 19.1%(42억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18.1%(40억원)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주시의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자금관리와 원가분석에 의한 수수료 및 사용료의 현실화 추진이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신규세입원을 발굴하는 일도 중요하다.

<표 3-1> 세입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교부금	보조금	지방채
금 액	538,335	140,690	128,976	58,710	12,355	41,263	146,341	10,000
구성비	100.0	26.1	23.9	10.9	2.3	7.7	27.2	1.9

자료 : 전주시 내부자료

<표 3-2> 경상적 세외수입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정수교부금 수입	이자수입
금액	22,203	366	4,234	9,943	4,017	3,643
구성비	100.0	1.6	19.1	44.8	18.1	16.4

자료 : 전주시 내부자료

<표 3-3> 임시적 세외수입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재산매각 수입	순세계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부담금	보조금	과년도 수입
금액	106,773	6,600	4,432	79,535	5,000	6,060	4,755	391
구성비	100.0	6.2	4.1	74.5	4.7	5.7	4.4	0.4

자료 : 전주시 내부자료

제 2 절 전주시의 향토지적재산권 활용 사례

1. 비빔밥 세계화 사업

1) 사업의 목적

전주의 향토자원인 비빔밥을 전통적인 옛 맛을 살려 관광상품화하여 세계지구촌의 음식으로 발전시키고, 해외시장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한 국제 프랜차이즈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을 전개하였다.

2) 사업의 개요

- 생 산 자 : 전주비빔밥(주) 대표 : 홍성윤
- 생산시설위치 :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1170 - 3
- 생 산 규 모 : 10,000식/일 (년간 3,600,000식)
- 총 투 자 비 : 754백만원 (국비 395, 시비 40, 자부담 319)

3) 사업의 추진상황

(1) 상표·서비스표 등록

- 전주비빔밥 상표등록 및 서비스표 특허청 등록 완료 : 1999. 12. 22
 - 등록번호 : 제0000734호
 - ※ 변경 : CHON-JU ⇒ JEON-JU 등록번호 7000호(03. 2. 19)
- 전주비빔밥 상표·서비스표 일본특허청 등록 : 2001. 8. 28(제4495797호)
 - ※ 변경 : CHON-JU ⇒ JEON-JU 등록번호 4596736호(02. 8. 16)
- 미국 : 출원일자(2000. 2. 11), 보정변경일 (01. 8. 1현재 진행중)

(2) 상표·서비스표 사용계약

- 상표·서비스표 사용계약(통상사용권)
 - 상표·서비스표권자 : 전주시
 - 상표·서비스표사용권자 : (주)전주비빔밥 홍성윤
- 1차 사용계약 : 1999. 7. 15
 - 상표사용료 : 99년말까지 1,000분의5, 2001년까지는 1,000분의 10,
2002년 1,000분의 20이내
- 2차 사용계약 : 2001. 6. 16
 - ① 상표사용료 : 2001년 1,000분의 10, 2002년 1,000분의 20이내
 - ② 서비스표사용료 : 국내체인점은 가맹비의 1,000분의 10이내,
국제프랜차이즈화는 매출액의 1,000분의 20이내
- 3차 사용계약 : 2004. 4. 1(3. 30조례개정)
 - ① 상표사용료 : 판매가의 1,000분의 3
 - ② 서비스표사용료 : 국내체인점은 가맹비의 1,000분의 10
국제프랜차이즈화는 가맹비의 1,000분의 10

4) 기대효과

- 향토전통음식의 세계화로 관광상품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세계적 명품화시 상표·서비스표 사용으로 많은 로얄티(시수입)예상

5) 세외수입 확충 효과

전주시의 비빔밥 상표·서비스표의 사용으로 인한 세외 수입은 지난 3년간 총 37,478천원 이었으며, 국내 사용료로 29,007천원 국외 사용료로 8,470천원의 세외수입을 확충하게 되었다.

향후 비빔밥의 매출 확대에 따라 사용료 징수에 따른 세외수입 확충을 기대할 수 있다.

<표 3-4> 전주비빔밥 상표·서비스표 사용료 수입

구 분	판매실적(수량, 개)			매출액(천원)			사용료(천원)		
	계	국내	국외	계	국내	국외	계	국내	국외
2001	114,516	104,916	9,600	204,041	186,487	17,554	2,040	1,865	175
2002	348,784	307,684	41,100	580,099	502,229	77,870	11,546	10,044	1,502
2003	815,901	560,030	255,871	1,194,578	854,915	339,663	23,892	17,098	6,793
합계	1,279,201	972,630	306,571	1,978,718	1,543,631	435,087	37,478	29,007	8,470

주 : 사사오입으로 인한 수치의 합 불일치

자료 : 전주시 내부자료

2. 전주시의 전통한옥 모형 산업화

1) 배경 및 목적

- 전주시의 전통주거양식 가운데 하나인 전통한옥마을을 자원으로 하여 한옥 모형건축의 생산 및 판매를 원활히 하고, 소득 창출과 방어적 측면에서 현존하는 건축물의 다양한 건축방식을 추가하여 실용신안 등록
- 전주정보영상진흥원의 문화영재캠프의 창의적 프로그램을 지적재산권으로 등록하여 산업화 방안 모색

- 문화영재교육을 위하여 개발한 표장에 의미부여로 교육홍보 효과와
- 향후 진출 가능한 상품과 서비스부분 권리 사전확보

2) 출원사항

(1) 실용신안 등록

- 출 원 인 : 전주시와 민영기모형건축 2인공동 출원
- 출원내용 : 전통한옥 등의 모형건축 조립방식에 기술적 아이디어를 접목
- 출 원 건 : 한옥건물모형 총7건

구 분	명 칭
1	조선시대의 주상포 조립구조에 + 아이디어
2	“ 동자주 조립구조 ”
3	“ 종도리 조립구조 ”
4	고려시대의 주심포 조립구조 A “
5	“ 주심포 조립구조 B ”
6	고려말의 다포 조립구조 “
7	삼국시대 백제 하양식 조립구조 “

(2) 상표·서비스표 등록

- 출 원 인 : 전주시
- 출원내용 : 문화영재교육에 사용하고 있는 로고의 중요부분 발취
- 출 원 건 : 총 6건 (표장2 * 3개류 지정등록)
- 표 장 :



○ 지정 상품류 및 서비스류

① 제28류

- 세트완구, 목제완구, 플라스틱제완구, 완구용블록, 퍼즐용 그림조각, 퍼즐용 나무조각, 퍼즐용 플라스틱조각

② 제38류

- 인터넷방송업, 교육방송업, 전기통신정보제공업

③ 제41류

- 교육정보제공업, 교육지도업, 서적출판업, 온라인전자서적 및 잡지출판업, 문화적 및 교육적 목적의 전시회조직업, 유치원경영업, 통신강좌업, 어린이 지능개발전문학원경영업, 레크레이션정보제공업, 레크레이션시설제공업, 온라인게임서비스업, 휴일캠프오락서비스업, 세미나준비 및 진행업

3) 출원에 따른 기대효과

- 현존하는 국보급 건축양식을 모형한옥의 기본모델로 제작판매하여 이익실현
- 권리등록 된 제작기법으로 타사에서 유사제품 제작시 로열티 획득
- 우리한옥의 장점을 교육하여 시대별 건축양식 학습효과 및 자긍심 고취
- 관광지별로 이야기를 담은 개별상품 전시 및 국내·외관광객 등에게 판매
- 완구류로 세트화하여 어려서부터 한옥에 대한 친근감을 가지고 배우는 계기 마련
-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권리보호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업추진
- 문화영재캠프 교육홍보효과와 후속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

4) 향후 계획

- 기존 모형의 마모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플라스틱 재질로 교육 및 완구류 제작
- 나무의 멋을 살리면서도 대량생산을 통하여 가격대를 낮춰 전시용·선물용 상품개발로 관광 상품화
- 조달청·교육기관 홍보, 인터넷 판매 등으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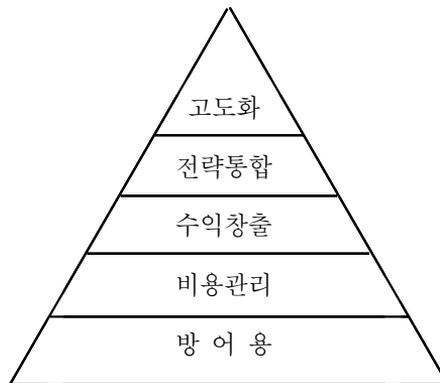
- 정보영상진흥원의 영재캠프 프로그램 중에서 특허대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적재산권 등록을 통한 권리확보 및 영재교육사업 확대
- 전주정보영상진흥원의 관련사업과 입주업체에도 적용하여 성장계기 마련
- 전주시 문화컨텐츠로 개발함과 동시 향토지적재산권 등도 특허를 받는 계기가 필요하므로 지역내 대상자들에 대하여 동기 부여

제 3 절 전주시의 향토지적재산권 경영단계 분석

1. 향토지적재산권 경영 단계

향토지적자산을 이용한 가치창출을 위해서는 현재 자치단체의 지적재산권 관리 및 활용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야만 그 수준에 맞는 적절한 대응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자치단체나 기업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활용 목적은 <그림 2>과 같은 5단계의 계층 중 하나의 계층에 속하며, 각각의 단계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그림 3-1> 지적재산권 활용 계층도

자료 : Julie L. Davis, Suzanne S. Harrison, Edison in the Boardroom: How Leading Companies Realize Value from Their Intellectual Assets, Wiley , 2001

1) 방어용 단계

지적재산권 관리에 있어서 가장 낮은 수준의 관리 단계로서, 경쟁자로부터 당기관 또는 자사의 제품, 관련 시장 및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지적재산권을 발굴하여 관리 활용하는 단계를 나타낸다.

2) 비용 관리 단계

지적재산권을 방어적 목적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 등 지적재산권의 활용 범위를 보다 넓은 단계를 나타낸다.

3) 수익 창출 단계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공격적 마케팅을 통하여 그 활용 범위를 더욱 넓혀 기관이나 기업의 새로운 수익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단계를 나타낸다.

4) 전략적 통합 단계

기관이나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과 지적재산권 전략을 통합 및 일치시킴에 의해 지적재산권이 기관이나 기업의 사업에 필요한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의 역량을 보다 강화시켜나가는 단계이다.

5) 고도화 단계

지적재산권을 향후 기관이나 기업 비즈니스의 핵심으로 육성 발전시켜나가는 단계이다.

2. 전주시 향토지적재산권 경영단계 분석

향토지적재산권 활용 단계에 있어서, 민간기업은 1단계 방어 단계에서부터 5단계 고도화 단계까지 전(全)단계에 걸쳐서 각 기관들이 처한 상황에 적합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며, 공공 연구기관들은 2단계에서 5단계에 걸쳐서 적절한 위치를 갖게 된다. 공공 연구기관들의 경우 조직이나 기관의 특성상 직접적으로 제품을 만들어 시장에서 경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을 사업의 보호용으로 활용하는 1단계의 목적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주시의 경우 비빔밥 상표·서비스표와 전통한옥 모형 실용신안권의 경우는 전주 지역의 향토색이 짙은 향토산업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장을 잠식당하는 것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부터 3단계 수익창출 단계의 위치에 있다.

향후 자치단체의 업무 특성상 고도화 단계에까지 이르기 어렵겠지만, 전략적 통합 단계의 수준까지 역량을 강화시켜 나간다면 향토지적재산권을 활용한 사용료 수익으로서 세외수입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중요한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갖게 될 것이다.

제 4 장

향토지적재산권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방안

- 제 1 절 향토지적재산권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 제 2 절 향토지적재산권의 활용방안

제 4 장 향토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활용방안

제 1 절 향토지적재산권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1. 향토지적자원 조사

향토지적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일차적인 과제는 향토지적재산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조사이다. 향토지적재산이 갖는 특수성, 향토지적재산의 소재 파악과 가치 발견에 필요한 지원, 향토지적재산 보유자들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토지적재산의 정확한 조사와 함께 이의 D/B화가 같이 이루어져야 하며, 끊임없이 D/B를 관리하고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전산관리체계가 확보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향토지적재산 전산관리시스템은 관리기관과 향토지적재산 보유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소통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향토지적재산 보유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정보 제공과 수정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2. 향토지적재산권의 실태분석 및 가치평가와 전산화 구축

향토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이를 수익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유하고 있는 향토지적재산권의 정확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향토지적재산권이 관련 산업부문의 R&D Project에 어느 정도로 적용되었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실태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 개발기술(제품)에 적용된 실태를 비교 분석하여 그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에는 구체적인 적용시기, 적용상태, 적용효과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태조사의 결과는 활용위주의 전산화가 필수적이다. 행정의 전체적인 개념속에서 전산화가 이루어져 관리정보 시스템으로 구축되어야 하고 기타 관련 정보체제와의 연계성의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

3. 향토지적재산권의 관리(출원, 등록) 대책

1) 지적재산 관리 조직 및 인원배치

우수한 향토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한 명세서 작성, 출원, 등록 유지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비전문인력으로는 지속하기 어렵다. 대기업이나 연구소 등과 비교하여 전문성 및 업무의 지속성을 고려할 때 그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향토지적재산권 내용이 기업의 방어출원 위주와는 다른 성격임에 비추어 볼 때 전문 관리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기술이전을 활성화하고 향토지적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i) 향토지적재산권과 라이선스를 전담하는 조직을 두는 방안과 ii) 지적재산권 활용업무의 전문화를 위한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권리 출원 및 관리 예산확보

예산조달방안으로 지적재산권의 사용료 수입의 일부를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용으로 충당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통상실시권 허여에 관해서는 재산권의 활용 업체에 지적재산권 관련비용을 청구하는 방법과, 산업화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을 착수할 때부터 미리 지적재산권 관련비용을 확보하고 통상실시권이 아닌 전용실시권 또는 양도 등으로 비용을 확보하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지나치게 영리만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추후에 계속되는 지적재산권의 확보를 위해서는 그 지적재산권을 이용하여 이득을 보고 있는 업체의 부담을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향토지적재산권의 국제출원시도

지방자치단체도 글로벌시대에 적극적인 국제출원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경우 시장을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향토지적재산의 권리를 국제출원 할 때 출원국선정을 하기 위하여는 기술이전 당사자인 국내외 기업의 입장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즉 국내외 기업의 입장에서 외국의 지적재산권 관리전략 판단시 우선

어떤 제품에 대해서 어떤 나라에 어떤 형태로 권리를 취득할 것인지 미리 결정해 두어야 한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해외기업활동을 시행할 경우, 관계되는 나라가 너무 많아서 활동할 기회도 여러 갈래로 걸쳐지게 되므로, 그러한 모든 것에 대응하는 권리취득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될 수 있는 한 장기적인 전망을 세우고, 미리 외국 권리취득 방침을 정하여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 방침을 책정하는데 있어서는 대외국의 권리출원제도에 대한 실태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1) 해외 기업활동의 파악

지방자치단체가 지적재산권의 권리취득 목적은 기업활동의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외국 권리취득방침을 책정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우선 어떤 나라에서 어떤 사업을 전개할 것인가라는 해외기업활동계획을 파악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어떤 제품을 어느 나라에 수출할 것인가? 어느 제품을 어느 나라에서 생산할 것인가? 어느 나라에 기술공여를 할 것인가? 라이벌메이커가 존재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 또 그 규모, 중요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될 수 있는 한 장기적으로 내다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해외 기업활동을 계획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나라의 산업상황이나 정치·경제적 상황을 반영시켜야 한다.

2) 현재 및 장래의 R&D 파악

해외기업의 R&D도 지방자치단체의 지적재산권 관리 전략상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 요소이다. 기업의 R&D는 5년 후나 10년 후의 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

해외 기업보다 선행하는 지적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지적재산권 관리방침을 숙지하고, 외국의 권리취득 방침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R&D에서 생기는 발명은 선행발명이 많고, 수요나 시장성에 대하여 불확정한 요소가 많은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런 발명이야말로 해외기업에 앞서서 다수의 나라에 권리를 확보하여야 하는 것이며, 향후 국내 기업으로의 이전을 통해 수익을 증가시켜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다. 눈앞의 수익만을 추구해서 5년 후, 10년 후의 일을 소홀히 한다면 안 될 것이다.

5. 향토지적재산권 갖기 운동 전개

지방자치단체 소속 전직원이 향토 지적재산권을 갖는 운동을 전개할 필요성이 있다. 세부적인 기술이나 발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이디어만이라도 제공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1인 1과제 발굴의 정신으로 발명을 진작시키고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최근 중소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허청에서도 지재권갖기운동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활동을 진작시키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적재산권 갖기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제 2 절 향토지적재산권의 활용방안

1. 향토지적재산권의 활용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향토지적재산권은 유한하기 때문에 한정된 권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장단기적 계획하에 관리되고 활용되어야 한다.

특히 향토지적재산은 산업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경제적 부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에도 사용료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장단기적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2. 보유 향토지적재산권의 적극적 활용대책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향토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향토지적재산권이 국내외 산업에서 어느 정도로 적용되었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실태를 분석하여야 한다. 청구범위와 실제 개발기술(제품)에 적용된 실태를 비교 분석하여, 그 효과를 파악해야 한다. 아울러 개별권리의 가치평가도 해야 한다.

둘째, 모든 과제가 다 기술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다 기술이전이 되는 비율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과제선정시 선행기술조사를 철저히 하여 기술

이전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권리출원시에도 선행기술조사 분석을 철저히 하며 기술이전가능성이 큰 기본과제를 많이 발굴하여 출원하도록 해야한다.

셋째, 기술이전 부서를 전문화하고 향토지적재산권의 가치평가, 활용실태과악 등의 작업을 위해 객관성이 보장되는 제3의 기관을 통해 작업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권리의 사용료수입을 현실화하고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i) 착수기본료를 높이는 방안 ii) 현재의 기술료산정방식에 일반적 실시료 산정방식과 기술개발의 실시 수익산정방식을 가미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규정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향토지적재산권을 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수익력 향상 및 국내외에서 독점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향토지적재산권의 활용을 지원해야 한다.

3. 향토지적재산 사이버 시장 운영

지방자치단체가 조사 발굴한 향토지적재산 및 향토지적재산권 활용의 촉진 및 홍보 보급을 활성화하고, 기술정보교류 및 기술거래 이전을 촉진하며, 첨단 지식산업의 창업지원정보 및 성공사례, 정부지원정책정보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향토지적재산 사이버시장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토지적재산을 근거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거나 제품개발을 희망하는 기업체에 게 관련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재산 및 권리의 사용권을 허여하고 이를 통해 사용료를 받아 세외수입을 확대하는 것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이중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제 5 장

결 론

제 5장 결론

30년만의 지방자치 부활과 민선자치단체장 선출에 따른 주민의 지역개발 및 복지 증진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자주재원 확충 필요성은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외수입 증대방안의 하나로 향토지적재산권을 활용한 사용료 수입 증대방안을 중심으로 검토 분석 하였다.

전주비빔밥을 소재로 하는 향토지적재산권을 활용하여 사용료 수입을 올리고 있는 전주시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수준에서는 매우 미미한 수준의 세외수입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향토지적재산권에 대한 가치가 보다 커지게 되는 경우 보다 확대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향토지적재산을 활용하는 경우 사용료 수입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적인 사업을 수행할 경우 사업수입을 올릴 수도 있다.

향토지적재산권의 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지역내에 보유하고 있는 향토지적재산권의 실태분석 및 가치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지역내 소재하고 있는 향토자원의 산업화 가능성을 고려한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조사와 함께 이의 권리취득을 위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으로는 향토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권리확보를 위해 지적재산권 갖기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며, 향토지적재산의 국제출원도 시도하여 시장을 다변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향토지적재산권의 활용을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향토지적재산권의 활용에 대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술이전 및 각 권리의 활용성을 고려한 향토지적재산권 사이버시장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세외수입 대상외에 새로운 세입원을 발굴하는 것 자체는 매우 어렵고 현실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의 세계화를 도모하면서 새로운 세외수입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향토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사업의 전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 서정섭,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의 평가와 개발전략”, 「산학기술연구소논문집」, 강남대학교산학기술연구소, 2001. 7
- 송영식·이상정·황종환, 지적소유권법(상, 하), 제6전정판, 1999
- 송영식·이상정, 지적재산법, 세창출판사, 1996
- 유정섭·변홍섭, 「세외수입실무」, 한국지방세연구회, 2001
- 윤선희, 지적재산권법, 전정판, 세창출판사, 1996
- 이상업, “지방세외수입 확충방안의 모색”, 「인문사회과학연구」, 한서대학교인문사회과학연구회, 1999. 1
- 이수범, “지방세외수입의 확충방안”, 「지방재정」, 제3호(통권 116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2
- 전상경, “지방세외수입의 현황과 문제점”, 「지방재정」, 제3호(통권 116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2
- 정상조 편, 지적재산권법강의, 홍문사, 1997
- 최근열, “지방세외수입의 실태와 확충방안 :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행정연구」, 서울행정학회, 1998. 6
- 최병규, “지적재산권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AIPPI KOREA JOURNAL」, 사단법인 한국국제산업재산권보호협회, 1999. 1
- _____, “특허권의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21」 제54호, 특허청, 1999. 5
- _____, “특허권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연구”, 「창작과 권리」 제14호, 1999
- 행정자치부, 「지방자주재정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업무 개선지침」, 2004
- 행정자치부·한국자치경영평가원, 세외수입연구발표사례집, 2003
- Julie L. Davis, Suzanne S. Harrison, Edison in the Boardroom : How Leading Companies Realize Value from Their Intellectual Assets, Wiley, 2001

전발연 2004-R-15

향토지적재산권 활용을 통한 세외수입 확충방안

발행인 | 한영주

발행일 | 2004년 10월 31일

발행처 | 전북발전연구원

560-82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66 KT빌딩

전화:(063)276-2060 팩스:(063)276-2069

본 출판물의 저작권은 전북발전연구원에 속합니다.